

『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구미시의회
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8월 18일

나. 발 의 자 : 권기만 · 길윤옥 · 김도문 · 박교상 · 박세채
윤서규 · 이갑선 · 임춘구 · 정근수 (9인)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8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8월 26일

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권 기 만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의회소관 「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등 7건의 조례의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을 일괄 정비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등)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 정비(안 제1조 등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지방공기업법」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. 5. 11과 2007. 10. 4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7개의 관련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,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낫표(「」)표기, 띄어쓰기 및 표현법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의회 회기운영 등 7개의 조례를 개별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,
-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